

한국항공대학교 학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1. 2. 7.		16	2017. 3. 21.	
2	2012. 2. 20.		17	2017. 11. 29.	
3	2012. 9. 7.		18	2018. 3. 12.	
4	2012. 11. 21.		19	2018. 11. 14.	
5	2013. 5. 15.		20	2019. 1. 2.	
6	2013. 11. 13.		21	2019. 4. 12.	
7	2014. 2. 24.		22	2020. 5 .6.	
8	2014. 5. 22.		23		
9	2014. 9. 17.		24		
10	2015. 3. 1.		25		
11	2015. 12. 11.		26		
12	2016. 5. 19.		27		
13	2016. 9. 29.		28		
14	2016. 12. 2.		29		
15	2017. 2. 22.		30		

한국항공대학교 학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한국항공대학교(Korea Aerospace University)는 항공우주과학을 중심으로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학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, 연구하고 아울러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실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육조직) ①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공과대학, 항공·경영대학(이하 “항공대학”이라 한다) 및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하며 학부, 학과(모집단위)와 입학정원은 <별표 1>과 같다. <개정 2012.2.20., 2017.11.29., 2019.4.12.>

② 교양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인문자연학부를 두며, 연계/융합 전공 교육을 위하여 공과대학에 공학융합학부를, 항공대학에 항공·경영융합학부를 둔다. <개정 2017.3.21., 2018.11.14.>

③ 삭제 <2007.9.1.>

④ 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서 항공·경영대학원을 두며 대학원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 <항 신설 2012.2.20.>

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

제3조 (수업연한) ① 본 대학교 신입생의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으로 한다. <개정 2018.3.12.>

② 본 대학교 편입생의 수업연한은 잔여학기로 한다. <개정 2018.3.12.>
[전문개정 2016.9.29.]

제4조 (재학연한)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6.9.29.>

② 삭제 <2016.9.29.>

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3 장 학년도, 학기, 수업일수 및 휴업일

제5조 (학년도 및 학기)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② 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. <개정 2014.2.24., 2019.4.12.>

1.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

2. 제2학기 :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

③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학기 수업은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

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 <신설 2019.4.12.>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,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.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9.4.12.>

제6조 (수업일수)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 <개정 2014.2.24., 2017.11.29.>

②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12.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학점당 강의시간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과목별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9.4.12.>

제7조 (휴업일)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, 겨울방학, 개교기념일(6월 16일), 일요일, 국정공휴일로 한다. <개정 2012.2.20.>

② 졸업식, 입학시험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전 항의 휴업일 이외에도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 휴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12.>

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0.>

제 4 장 입 학

제8조 (입학구분 및 시기) ① 입학은 신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으로 구분한다. <항 신설 2012.2.20.>

②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초 수업개시 4주 이내로 한다. 다만, 재입학 및 외국인 유학생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 초 수업개시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0.>

제9조 (신입학 자격) ①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2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3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

② 항공운항학과 지원자는 전 항의 조건과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10조 (편입학) ① 편입학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 <항 신설 2012.2.20.>

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12.2.20.>

1.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<호 신설 2012.2.20.>
2.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<호 신설 2012.2.20.>

3. 전 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<호 신설 2012.2.20.>

③ 편입학생은 「고등교육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, 2학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. <개정 2007.9.1, 2012.2.20., 2014.5.22.>

④ 삭제 <2012.2.20.>

⑤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3학년에 편입학(이를 ‘학사편입학’이라 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0.>

⑥ 삭제 <2014.5.22.>

제11조 (재입학)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려할 때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② 제43조 제3호 해당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. <개정 2012.2.20.>

③ 삭제

④ 삭제 <2007.9.1.>

⑤ 제43조 제6호 내지 제7호 해당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9.1., 개정 2012.2.20.>

제12조 (입학지원 서류) 본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모집요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,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20.>

1. 삭제 <2012.2.20.>

2. 삭제 <2012.2.20.>

3. 삭제 <2012.2.20.>

제13조 (선 발) ①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, 고등학교 생활기록부(내신)성적, 대학별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참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. <개정 2012.2.20.>

② 전 항의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여부는 그 시기마다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14조 (입학허가자 구비서류)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시요강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제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20.>

② 전 항의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5조 (보증인) ① 삭제 <2012.2.20.>

② 삭제 <2012.2.20.>

제 5 장 등록, 교과이수 및 졸업

제16조 (등록)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하는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수강신청)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

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수강신청한 과목은 소정의 수강정정기간 외에는 학기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수강신청과목의 취소는 수업일수 4주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제18조 (교과편성)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, 전공과목, 일반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,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, 필요할 경우 필수와 선택을 혼합한 선택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 단, 제3항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및 제4항의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에 의한 교과구분 표시는 위의 기본 교과구분 표시에 병기한다. <개정 2008.2.11., 2010.7.1., 2012.2.20., 2018.3.12.>

②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③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은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 따른다. <개정 2010.7.1.>

④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08.2.11., 2010.7.1.>

제18조의2 (전공과목) 전공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과목을 편성·운영한다.

1. 기본전공과목: 해당 전공 분야의 기본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과목

2. 심화전공과목: 해당 전공 분야의 심화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과목

[본조신설 2019.4.12.]

제19조 (교양과목) 교양과목은 인문사회, 자연과학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12.>

제20조 (선수과목) ①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하위 학년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 항의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최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21조 (학 점)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다만 실습, 실험, 실기, 체육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14.2.24., 2017.11.29.>

제22조 (학기당 학점) 학생은 매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1., 2012.2.20., 2016.9.29.>

제23조 (수료학점)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1. 제1학년 33학점 이상 <개정 2015.3.1.>

2. 제2학년 65학점 이상 <개정 2015.3.1.>

3. 제3학년 98학점 이상 <개정 2015.3.1.>

4. 제4학년 130학점 이상 <개정 2015.3.1.>

제24조 (편입생의 학점인정) 편입생에 대하여는 편입 전 학력을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0.>

제25조 (학기재수 및 과목재수) ① 교과목 성적이 불량하여 학점 재취득을 희망하는 자는

학기재수 또는 과목재수를 할 수 있다.

② 삭제

③ 학기재수 및 과목재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26조 (졸업학점)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이며,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은 2.00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, 2015.3.1.>

②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졸업학점 및 이수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 따르며,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이수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.>

③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의 전공학점은 해당 학부(과)별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내규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2.11., 개정 2010.7.1.>

제27조 삭제

제27조의2 (교직과정) ① 교직과정의 학점이수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과)에 소속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②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7조의3 (학·석사 연계과정)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7.9.1., 2012.2.20.>

제27조의4 (학·군 제휴) 학·군 제휴 협약에 의해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 등 학·군간 학문교류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27조의5 (타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) 학점교류제, 교환학생 프로그램, 복수학위제 등 국내·외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11.14.]

제28조 (졸업 및 학위) ①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며, 학위증 서식과 학부(과)의 전공별 수여학위명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, 2019.4.12., 2020.5.6>

② 전 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을 못한 자는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8.2.11.>

③ 졸업대상자 결정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장이 결정하며, 졸업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11., 2012.2.20., 2015.3.1.>

④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학점인정과정에서 소정 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.

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한 전공을 학위증에 표기하며, 그 전공명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7.1., 2012.2.20., 2019.4.12.>

⑥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한 전공을 학위증에 표기하며, 그 전공명은 세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08.2.11., 개정 2012.2.20., 2019.4.12.>

제28조의2 (조기졸업) ① 6학기 이상 등록을 필요하고 학업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는 제3조의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0.>

②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29조 (학점 및 학위수여의 취소) ①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.

②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1.>

제 6 장 시험과 성적

제30조 (시험과 출석) ①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학기 중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각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 수의 1/4 이상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③ 삭제

제31조 (성적평가)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과 출석 및 과제 등 평소성적을 종합 평가하되,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한다. 단, 상대평가에 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등 급	실 점	평 점
A ⁺	95~100	4.5
A ^o	90~94	4.0
B ⁺	85~89	3.5
B ^o	80~84	3.0
C ⁺	75~79	2.5
C ^o	70~74	2.0
D ⁺	65~69	1.5
D ^o	60~64	1.0
F	0~59	0.0

② 전 항의 성적 등급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기호를 사용한다. <항 신설 2012.2.20., 개정 2014.5.22.>

1. P(Pass), NP(No Pass) : 합격(Pass), 불합격(No Pass)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평가 기호 <호 신설 2014.5.22.>

2. R(Retake) : 과목재수로 학점을 재취득하는 경우 기존성적을 대체하는 평가기

호로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<호 신설 2014.5.22.>

제32조 (학점인정) ① D°급 이상을 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성적을 인정하고 해당학점을 부여한다.

② 성적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.

③ 국내·외의 다른 대학 및 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본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인정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1., 2019.4.12.>

④ 삭제 <2019.4.12.>

⑤ 삭제 <2019.4.12.>

제33조 (성적경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경고를 한다.

1. 당해 학기성적 평점 평균 1.80미만 자

2. 삭제

3. 삭제

② 전 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 이미 받은 성적경고 기록은 추후 과목재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.

제34조 (재시험)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재시험에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B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35조 (추가시험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.

② 추가시험에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7 장 전과 및 전공

제36조 (전 과) ①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(과)별 입학정원의 25%까지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 단, 학사 구조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9.17., 2018.3.12.>

② 전과에 대한 자격, 방법과 시기 및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36조의2 (전공의 구분 및 이수 의무) ①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주전공(기본전공·심화전공)

2. 부전공

3. 복수전공

4. 연계·융합전공

② 모든 학생은 주전공의 기본전공 이수와 더불어 부전공, 복수전공, 연계·융합전공 또는 주전공의 심화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자유전공학부는 별도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4.12.]

[중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<2019.4.12.>]

제36조의3 (학부(과) 전공) ① 학부(과)로 입학한 학생은 소속된 학부(과)의 전공분야 중 필히 하나의 주전공(이하 “제1전공”이라 한다.)을 선택·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. 단, 자유전공학부는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9.4.12.>

② 제1전공은 제18조의2에 따른 전공과목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신설 2019.4.12.>

1. 기본전공: 제1전공의 기본전공과목을 이수

2. 심화전공: 제1전공의 심화전공과목을 추가 이수

③ 학부(과) 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4.12.>

[본조신설 2018.3.12.]

[제36조의2에서 이동 <2019.4.12.>]

제37조 (부전공) ①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8.3.12.]

제38조 (복수전공) ①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복수전공 이수자는 입학정원 내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8.3.12.]

제38조의2 삭제 <2018.3.12.>

제38조의3 (연계·융합전공) ① 1개 이상의 학부(과)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연계전공과 2개 이상의 학부(과)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융합전공을 둔다. <개정 2018.3.12.>

②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연계·융합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항 신설 2018.3.12.>

③ 연계·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3.12.>

[본조신설 2015.12.11.]

제 8 장 휴학, 퇴학 및 제적

제39조 (휴 학) ① 질병, 군복무, 창업, 육아(임신·출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밖의 개인 사정으로 4주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을 경우,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9.29., 2016.12.2., 2018.11.14.>

② 재학생으로서 법정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시킬 수 있다.

제40조 (휴학의 제한) ① 휴학기간은 1회에 1년(2개 학기)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4년(8개 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

여 재학연한의 1/2를 넘지 못한다. <개정 2007.9.1.>

② 휴학 사유가 질병, 군복무, 창업 또는 육아인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1., 2016.12.2., 2018.11.14.>

③ 삭제 <2018.11.14.>

제41조 (복 학) ① 휴학자의 복학은 매 학기 수업개시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.

②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해당 학기에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개시 4주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.

③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전입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 따른다. <개정 2010.7.1.>

④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 전공으로 복학하는 학생의 복학 절차는 해당 학부(과)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내규에 의한다. <신설 2008.2.11., 개정 2010.7.1.>

제42조 (자 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43조 (제 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.

1.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

2.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
3. 타교에 적을 둔 자

4. 장기간 무단결석한 자 <개정 2018.3.12.>

5.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
6. 자퇴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리된 자 <개정 2012.2.20.>

7.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.

8. 전 7호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첫 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은 자 <신설 2007.9.1.>

제 9 장 학생활동

제44조 (총학생회) ① 학생은 총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총학생회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③ 총학생회는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.

제45조 (회 비) 삭제

제46조 (조직신고)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7조 (학생지도)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지도교수에게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,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,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

단히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8조 (금지활동) 학생은 수업 및 연구활동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49조 삭제

제50조 (간행물)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10 장 포상과 징계

제51조 (포 상) ①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0.>

②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52조 (징 계)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,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1. 삭제 <2012.2.20.>
2. 삭제
3. 삭제 <2012.2.20.>
4. 삭제

제 11 장 직제 및 부속기관

제53조 (직 제) 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53조의2 (산학협력단) 본 대학교에는 정부의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. <개정 2007.9.1., 2019.4.12.>

제53조의3 (학교기업설치) ①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교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4.12.>

② 학교기업의 소재지, 학교기업명, 사업종목, 관련학부(과), 시설,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및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7.1.]

제53조의4 (학교기업의 현장실습활용) ① 학교기업에서는 학생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단,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

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14.2.24., 2017.11.29.>

③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관한 상세사항은 해당 학부(과) 내규에 따른다.

제53조의5 (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)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40%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학교기업 순이익의 5%를 넘을 수 없다.

③ 학교기업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,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.

④ 제2항,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기업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.

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

제54조 삭제 <2012.2.20.>

제55조 (부속기관)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를 둔다.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「직제규정」에 의하며,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7.9.1., 2008.10.1., 2009.7.1., 2012.3.29., 2013.5.15., 2013.11.13., 2014.5.22., 2015.12.11., 2018.3.12.>

②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. <개정 2013.5.15., 2014.5.22., 2015.12.11., 2018.3.12.>

제55조의2 (학군단) ① 본 대학교에 「학생군사교육실시령」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을 둘 수 있다.

②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9.7.1.]

제 12 장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

제56조 (교수회)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.

② 교수회는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총장이 된다.

③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,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전임교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총장은 교수회를 소집한다. <개정 2011.2.7.>

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선출을 위한 교수회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항 신설 2012.2.20.>

제57조 (교수회의 심의사항) ①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삭제
2.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
3. 입학, 졸업 및 진급에 관한 사항
4.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
5.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6. 장학에 관한 사항
7. 기타 교육상 중요한 사항

② 전 항의 심의사항 중 사안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교무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심의 또는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심의 결과는 추후 교수회에 보고한다.

③ 삭제

제58조 (교무위원회) ①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.

② 교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③ 삭제 <2008.10.1.>

제58조의2 (학칙개정 절차)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개정한다. <개정 2012.2.20.>

1. 학칙 개정안 작성 및 공고

교무처장은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에 사전 공고하며, 그 결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한다.

2. 심의 및 공포

교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대학평의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정안을 공포한다.

[본조신설 2008.10.1.]

제58조의3 (자체평가) ①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9.7.1.]

제 13 장 등록금 <개정 2014.2.24.>

제59조 (등록금의 납부)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24.>

제60조 (등록금의 감면 및 반환) ① 등록금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11., 2012.2.20., 2014.2.24., 2018.3.12.>

② 삭제 <2014.2.24.>

제60조의2 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대학(대학원 포함)의 등록금 책정 심의 및 예·결산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4.2.24.>

②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, 동문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 경우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3/10 이상이 되도록 한다.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위원회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2.2.20., 2014.2.24.>

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4.2.24., 2018.3.12.>

[본조신설 2011.2.7.]

제 14 장 장학금

제61조 (장학금의 지급)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

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2조 (장학금 지급의 정지) 장학금의 수혜 학생이 퇴학,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15 장 위탁생,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

제63조 (위탁생) 정부 및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라도 수학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12.>

제64조 (입학정원 외 입학) 입학정원 외 입학은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. <개정 2007.9.1.>

제64조의2 (외국인 입학) ①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7호에 의거 외국인의 경우는 신입학 또는 2, 3학년에 정원 외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0., 2014.9.17.>

② 외국인 입학에 대한 신입학 또는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2.2.20.]

제65조 (학칙의 준용) 위탁생 및 특례입학 학생에게는 따로 정하는 규정 이외에는 학칙을 적용한다. <개정 2012.2.20.>

제65조의2 (장애학생 지원 등)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8.3.12.>

[본조신설 2012.4.1.]

제 16 장 계절수업 및 공개강좌

제66조 (계절수업) ①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매 계절 학기는 학기당 3주 이상의 수업을 과하여야 하고, 학기당 7학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7.9.1., 2010.7.1.>

제67조 (공개강좌) 본 대학교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직무,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능력의 습득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제68조 (교원의 교수시간)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24., 2017.11.29.>

② 겸임교원, 명예교수, 시간강사 및 초빙교수 등의 교수시간은 자격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11.29.>

제69조 (시간제 등록생) ①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연도 매 학기별 신입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.

②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8.3.12.>

제 17 장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

- 제70조 (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)**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4.5.22.>
- ② 삭제 <2014.5.22.>
- 제71조** 삭제 <2014.5.22.>
- 제72조** 삭제 <2014.5.22.>

제 18 장 계약학과

- 제73조 (설 치)**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(이하 “위탁단체”라 한다)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(이하 “계약학과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12.>
1.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
 2. 위탁단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
- 제74조 (명칭 및 입학정원)**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20., 2019.4.12.>
- 제75조 (교과과정)**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위탁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을 정할 수 있다.
- 제76조 (지원 자격 및 선발)**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각각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
- ②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제8조 내지 제10조, 제12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. 단,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0.>
- 제77조 (등록금)** 계약학과의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록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4.2.24.>
- 제78조 (학기 및 수업일수)**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. <개정 2012.2.20.>
- 제79조 (설치 운영기간)**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과 학칙에 명시 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른다. <개정 2018.3.12.>
- 제80조 (학사제도 적용)**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, 전과, 재입학, 복수전공, 부전공, 학점교류, 유급 등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른다. <개정 2018.3.12.>
- 제81조 (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**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

협약서에 따른다. <개정 2018.3.12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학칙 인가 당시 국립한국항공대학의 학과별 재적학생은 본 대학해당 학년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
3. 학칙 인가 당시 국립한국항공대학의 학적 기타 학생신분에 관한 부칙은 본 대학에서 인수 관리한다.
4. 이 학칙 제34조(졸업학점)의 규정은 197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, 197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한국항공대의 학칙을 적용한다.
5. 이 개정 학칙은 197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6. 1975년 4월 학칙 제60조 및 제61조의 의거 제적된 자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1981학년도까지 학장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7.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(경과조치) ① 이 개정 학칙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② 1981학년도 이후의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복학, 재입학, 편입 및 유급하는 자의 졸업학점은 따로 정하며, 학칙 제30조의 제1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관여하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다.
11.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12.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3. 이 개정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4.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5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6. (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)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.
17.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8. (경과조치) ①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대상자 중 졸업정원에 초과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졸업 자격고사에 합격되어야 졸업을 인정한다.
② 대학졸업 자격고사 실시에 따른 방법은 이를 따로 정한다.
19. 이 개정 학칙은 199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20.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199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21.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2.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23. ①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,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복수전공에 대한 경과조치)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부터 적용한다.
- ③ (학과명칭 및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이학계열 항공관리학과 및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이 학칙 시행 전에 이학계열 항공관리학과 및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1995학년도 이후 학과명칭 및 계열이 변경된 이학계열 항공교통학과 및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,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명칭 및 계열을 적용한다.
24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5. (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항공경영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이 학칙 시행 전에 항공경영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1996학년도 이후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영학과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,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 명칭을 적용한다.
26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7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199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28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29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0. (시행일) ①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2000년 3월 1일 학부제 시행 이외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은 1999년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.
3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2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3. ①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2004학년도부터 항공우주법학과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개편하고 2004학년도 이후 항공우주법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주간 학생으로 본다.
34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5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6. (시행일) ①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05학년도부터 전자·정보통신·컴퓨터공학부를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5학년도 이후 학부명칭이 변경된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.
37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학칙 제53조의3, 53조의4, 53조의5의 학교기업설치에 따른 학칙 개정

38. (시행일) ①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수여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05학년도부터 항공운항학과 수여학위종별을 공학사에서 이학사로 변경하고 2005학년도 입학생과 동일 학년 이하로 항공운항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.
39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0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2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경과조치) 공학인증 일반프로그램과 공학인증 전문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 ③ (경과조치) 학칙 제73조 내지 제81조의 계약학과 운영은 200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한다.
 ④ (경과조치) 제38조의 2 제1항의 학부전공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43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2008학년도부터 경영학과야간 및 영어학과야간을 주간으로 개편하고 2008학년도 이후에 경영학과 또는 영어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주간 학생으로 본다.
 ③ (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) 학칙 제11조 제5항은 2008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대상부터 적용한다.
44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항공교육인증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 ② (경과조치) 학칙 제43조 8호는 2007학년도 9월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45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학과 학부 통합 후 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항공교통물류학부와 항공우주법학과를 학부로 통합하며, 통합된 학부의 명칭을 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로 한다.
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이학계열 항공교통물류학부 또는 사회계열 항공우주법학과에 입학한 자는 해당학부(과)의 학적을 유지한다. 다만, 이 학칙 시행 전에 항공교통물류학부 또는 항공우주법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2009학년도 이후 통합된 이학계열 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,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학부명칭 및 계열을 적용한다.
 ④ 학칙 제22조는 200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.
46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7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8. ①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경과조치) 2010년 3월 1일부터 항공우주기계공학 프로그램은 항공우주공학 프로그램으로 변경운영하고, 기계공학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한다.
 ③ (경과조치) 항공교통물류학부(항공교통전공, 교통시스템전공, 교통융합전공, 물류관

리전공)로 졸업하는 자는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고, 항공우주법학과로 졸업하는 자는 법학사 학위를 수여한다.

49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50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제11조 제1항의 재입학 1회 제한은 2012학년도 입학한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적용하며, 그 이전 신입생과 편입생은 종전과 동일하게 학칙 제4조의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재입학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5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55조 제1항 제2호는 2012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.
52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65조의 2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53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① 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의 “물류관리전공” 과 “교통융합전공” 은 2013년 3월 1일부터 “물류전공” 으로 통합·적용된다.
② “물류전공” 통합 이전 “물류관리전공” 또는 “교통융합전공” 을 이미 배정받은 자는 2014년 8월 졸업자까지만 통합이전 전공명칭으로 졸업이 가능하다. 단, 휴·복학 등의 사유로 재학연한이 늘어난 자는 통합된 전공명칭을 따른다.
54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② (학부 분리·신설 후 학부(과)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는 항공전자정보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로 분리·신설된다.
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에 입학한 자는 해당학부의 학적을 유지한다. 다만, 이 학칙 시행 전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에 입학한 자로서 2015학년도 이후 항공전자정보공학부 또는 소프트웨어학과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원에 의거 분리·신설된 학부(과)의 학적을 적용한다.
55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) 제5조 제2항, 제6조 제1항, 제21조, 제53조의4 제2항, 제68조 제1항은 수업일수가 매 학년 32주 이상(매 학기 16주 이상)으로 조정되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③ (대학등록금운영관한규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제60조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56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성적평가에 따른 경과조치) 제31조 제2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③ (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제55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④ (성폭력·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에 따른 경과조치) 제70조 내지 제72조는 2014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.
57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58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② (학과 통합 후 학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학과 또는 영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. 다만,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.
- ③ (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당시 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6년 3월 1일부터 항공교통물류학부 재적생으로 본다. 다만, 학생이 종전 학부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.
- ④ (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) 개정 학칙중 제23조, 제26조, 제32조는 2013학번신, 편입생부터 적용한다.
59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경과조치) 제28조 제5항의 개정 <별표 3>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.
60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경과조치) 항공정비연계전공을 항공MRO연계전공으로의 명칭 변경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61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학칙 제22조는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62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63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64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65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66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 ② (기초과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2018학년도부터 “기초과목” 이수구분은 폐지하며, 2017학년도 이전 “기초과목”으로 구분된 교과목은 2018학년도 이후 교과과정에 관련 교과목으로 대체 설정할 수 있다.
67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68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69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 ② (제1전공 외 전공 추가이수 의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제1전공 외 부전공, 심화전공 등 추가이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.
1. 201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. 단, 편입학생은 예외로 한다.
 2. 2018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학부

(과)에 따라 운영내규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70.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첨단학과 신·증설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.

<별표 1>

입학정원표(2000 ~ 2008학년도)

계열 및 학과	학년도							구분	계열	학부 및 학과	학년도		
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			2007	2008	
공 학 계	660	660	660	660	660	600	600	공과 대학	공학	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	240	240	
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	240	240	240	240	240	240	240			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	300	300	
전자·정보통신·컴퓨터공학부	300	300	300	300	300	-	-			항공재료공학과	60	60	
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	-	-	-	-	-	300	300		항공· 경영 대학	이학	항공교통물류학부	60	60
항공운항학과	60	60	60	60	60	-	-				항공운항학과	60	60
항공재료공학과	60	60	60	60	60	60	60			사회	항공우주법학과	30	30
이 학 계	60	60	60	60	60	120	120				상경	경영학과	70
항공교통학과	60	60	-	-	-	-	-	경영학과(야간)	40	-			
항공교통물류학부	-	-	60	60	60	60	60	인문 자연 학부	어학	영어학과(야간)	30	-	
항공운항학과	-	-	-	-	-	60	60			영어학과	-	30	
상 경 계	110			총 계	890	890							
경영학과	70	70	70	70	70	70	70						
경영학과(야간)	40	40	40	40	40	40	40						
어 학 계	30												
영어학과(야간)	30	30	30	30	30	30	30						
사 회 계	30												
항공우주법학과	-	-	-	-	30	30	30						
항공우주법학과(야간)	30	30	30	30	-	-	-						
총 계	890												

입학정원표(2009학년도 이후) <개정 2015.3.1, 2017.3.21., 2017.11.29., 2020.5.6>

구분	계열	학부 및 학과	학년도					
			2009 ~2014	2015	2016	2017	2018 ~2020	2021이후
공과 대학	공학	공학계열	-	-	-	-	-	40
		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	240	240	240	240	213	195
		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	300	-	-	-	-	-
		항공전자정보공학부	-	220	220	220	195	179
		소프트웨어학과	-	80	77	70	70	66
		항공재료공학과	60	60	60	60	54	52
		스마트드론공학과(첨단학과)	-	-	-	-	-	50
항공· 경영 대학	이학	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	90	90	-	-	-	-
		항공교통물류학부	-	-	84	84	84	84
		항공운항학과	60	60	60	60	54	54
	상경	경영학과	110	110	-	-	-	-
경영학부		-	-	120	120	107	107	
인문자연학 부	어학	영어학과	30	30	-	-	-	-
자유전공학부			-	-	-	-	50	50
총 계			890	890	861	854	827	877

계약학과 입학정원표 <삭제 2014.5.22>

<별표 1-4> 삭제

<별표 1-5> 삭제

<별표 2> 삭제 <2019.4.12.>

<별표 3> 삭제 <2019.4.12.>

<별표 4> 삭제 <2019.4.12.>

<별지서식 1> 삭제 <2019.4.12.>